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39호

「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30일

## 강릉시의회의장

#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기준 등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우선주차구역의 이용(안 제6조)
- 마.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(안 제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#### 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jhyoon93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유공자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- 가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- 다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
-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
- 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- 바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 민주유공자 본인
- 사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

## 임무유공자 본인

아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

2. “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”(이하 “우선주차구역”이라 한다)이란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강릉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강릉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

제5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)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규모를 고려하여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,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.

③ 시장은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국가유공자등은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  
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 
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 
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)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  
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  
소로 이동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(제5조제3항 관련)

1. 규격

가. 바닥면 가로 2,300mm × 세로 5,000mm

나. 안내표지판 가로 700mm × 세로 600mm

2. 도안

가. 바닥면



나. 안내표지판



[붙임 2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